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 화상 공판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는 공판을 화상으로 시행합니다. 화상 공판은 당사자들에게 증인 증언, 영상 및 문서를 전시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법적 논쟁을 제공합니다. 화상 공판은 Zoom 을 통해 행정법 판사가 처리합니다.

Zoom 은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행정법 판사가 화상 공판 지침을 제공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공판에 앞서 사전 공판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사전 공판 회의는 Zoom 을 통해 진행되며 지침이 제공됩니다. 사전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판에서 증언할 증인을 식별합니다. 증인이 증언할 장소를 행정법 판사에게 알려줍니다. 증인 출석을 강요하기 위해 소환장이 필요한지 논의합니다. 공판에 증거로서 보여줄 문서나 사진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항소위원회는 추가 지시를 제공하는 화상 공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는 화상 공판에 앞서 증거물을 제출하는 방법 등 화상 공판에 필요한 단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문에는 참여자가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 Zoom 회의 식별 번호("회의 ID")가 제공됩니다.

화상 공판은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대질 심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직접 공판 형식과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행정법 판사는 증거품들이 청문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화면에 띄어 놓을 것입니다. 실제 현장 공판과 마찬가지로 행정법 판사는 당사자의 적법한 절차권이 보호되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 고용주의 의무 게시 요구사항

본 고지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8 조 제 356 절 및 제 356.1 절에 따라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들은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제(Laws and Regulations)"를 클릭하십시오.

### 참여 알림 - 배달 및 게시

항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안내서 및 사건 내역이 나온 항소서 사본 및 이의제기가 된 처벌 안내문은 위반 혐의 장소 또는 직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타 장소 근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본 서류들은 또한 모든 공인된 직원 대리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본 서류들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직원 및 사망한 직원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게시한 후, 고용주는 참여 통지서 및 문서화된 항소 양식의 게시 증명서를 산업안전보건부(Cal/OSHA)에 제출해야 합니다. (Cal. Code Regs., title 8, § 356).

### 공판 통지

공판 통지는 이 통지와 같은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모든 공식 직원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직원 및 사망한 직원의 대리인에게 공판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al. Code Regs., title 8, § 356).

### 발견 및 소환장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얻거나(특권이 없는 한) 상대방이 소지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Cal. Code Regs., title 8, § 372 and § 372.1). 인물의 참석 또는 문서 제작 또는 공판 관련 물품을 위한 소환장은 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Cal. Code Regs., title 8, § 372.2).

### 대리인 및 주소 변경

지명된 대리인에게 변경 사항이 있거나, 항소 신청 후 대리인이 연락처 정보(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변경한 경우, 항소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www.dir.ca.gov/OSHAB](http://www.dir.ca.gov/OSHAB) 의 지원 양식을 완료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공판

공판은 행정법 판사가 주관하며, 증거들은 사실을 발견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각 당사자는 증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증거물을 소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반대되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대 당사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Cal. Code Regs., title 8, § 376.1). 관련 증거만 인정됩니다.

### 판결

행정법 판사가 판결문을 제출한 후 판결문이 발행됩니다.

주요 기관

남부 캘리포니아 사무소

산업관계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업관계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2520 Venture Oaks Way, Suite 300

100 N. Barranca Street, Suite 410

Sacramento, CA 95833

West Covina, CA 91791

(916) 274-5751

(626) 332-1145

# 직원에게 참석 의무 알림

귀하의 고용주인

---

(Name of Company)

**을(를)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Check which of the following is applicable)*

\_\_\_ 처벌 및/또는 민사 형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직업안전보건심판원)을 대상으로 공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또는

\_\_\_ 산업안전보건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정한 기간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직업안전보건소)을 대상으로 공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조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가 정한 약관에 따라  
본 공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45절에 나와 있는 당사자 지위에 대한 명령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지위에 대한 동의는 다음 주소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ppeals Board)  
2520 Venture Oaks Way, Suite 300  
Sacramento, CA 95833

당사자 지위에 대한 명령 신청은 소장의 송달 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호, 제355.3절에 명시된 대로 산업안전보건부 및 사용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공판이 진행되려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8 조, 제 359.1 절의 요건에 따라 고용주의 문서화된 항소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Describe location reasonably convenient to employees, preferably at or near workplace)*

---

---

---

---